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93호
- 제출자 : 김재국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현 행	개 정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안 제6조)
- 예우 및 지원 (안 제7조)
- 포상 및 비밀준수 (안 제8조~제9조)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안건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증 장려 계획 수립과 장기기증자,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0개의 조와 부칙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명)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함.
- (목적)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함.
- (정의) 안 제2조에 상위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¹⁾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²⁾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
-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에서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시기, 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함.
-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안 제6조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 나. 심장판막·혈관
 -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예우 및 지원) 안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기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사업을 확대함.
- (비밀준수) 안 제9조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 간 비밀 유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준수 조항을 마련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장기등만을 기증하는 현행 조례에서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이를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추진 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95호
- 제출자 : 현옥순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지원사업 추진 (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안건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임.

나. 조례 규정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함.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 38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이와 동일·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종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명	법령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8.
2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23.
3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4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2.

* 그 외 경기도 내 타 시군구는 조례 미제정.

다.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는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립준비 청년 등”의 용어를 정의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우선토록 규정함.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제1항은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각호로 명시하였음. 제3항에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 안 제6조는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근거하여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사무의 위탁) 안 제7조는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예산의 지원) 안 제8조는 해당 조례의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해당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과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최근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복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기존 정부 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유관기관 간담

회 및 조례안 예고,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 없음.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명)

연도	연도별 보호종료 대상자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자 (보호종료 5년이내)
	총계	보호종료	보호연장(보호연장비율)	
2020	50	38	12 (24%)	106
2021	51	31	20 (39%)	111
2022	43	21	22 (51%)	127

※ 2022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연장 가능하여 보호연장 비율 증가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94호
- 제출자 : 박은경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5조)
- 지원 내용 확대 (안 제4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 신설 (안 제6조)
- 부칙 유효기간 삭제 (안 부칙)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안건은 대상자의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안 제4조제2항 지원 항목에 「의료비」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6조 지원 중지와 환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철저한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타당성 및 영향 등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로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아 협의 제외 대상임.
- 본 조례안은 위기 발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79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비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비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12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안 제8조)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추가 (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안건은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2023. 4. 28. 신설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복지 지원 등)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문의 내용과 별지 서식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 (수당 등 지급) 안 제8조에서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지급신청) 안 제10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안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안산시는 2009년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보훈명예수당 인상 추진경과]

조례명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9	2011.4.7	2012.4.1	2015.1.1	2018.4.20	2019.12.24	2022.4.27	2023.4.28	
참전유공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65세 이상	11만원(80세이상) 9만원(80세미만)	16만원	
	70세 이상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	-	3만원	5만원	연령기준 폐지	7만원	7만원	
	-	-	-	65세 이상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	-	-	-	-	-	5만원	

○ 그러나, 경기도 내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관내 보훈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요청³⁾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그 외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7만원 이하 지급 시군 (2023.9월 기준) □ 안산시 포함 9개 지자체 (안산, 고양, 남양주,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오산, 동두천)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타당성 및 영향 등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지자체 보훈사업은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대상으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 저촉사항이 없음.

3) '2023.04.24.(월) 10개 보훈단체 1차 간담회/2023.05.09.(화) 2차 간담회 시 요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가칭)시립도담도담]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86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2024. 2. 28.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체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신청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위탁운영) 및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및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운영체에 위탁운영 필요

□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

○ 민간위탁 기간

-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2024. 3. 1. ~ 2029. 2. 28.(5년)
- 시립도담도담어린이집 : 2024. 4. 1. ~ 2029. 2. 28.(5년)

※ 「안산시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원장이 만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무내용

-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그 외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현위탁 운영자	연면적 (m ²)	보육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위탁기간	위탁유형
시립 안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단원구 신길중 양로 17	김진경 (개인)	346.9	97명 (63명)	13명	5년	변경 위탁
(가칭)시립 도담도담 어린이집	단원구 적금로 76	임선화 (개인)	133	24명 (23명)	9명	5년	신규 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따라 심의

-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시립도담도담어린이집 : 전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정책위원회 우선 심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보육체계를 시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특히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신청한 (가칭)시립도담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이 아닌 전 어린이집 운영자가 우선 심의 대상인 만큼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공신력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80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6일

2. 제안이유

- 안산시 기업인의 날 지정 ·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안산시 기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 및 『기업도시, 안산』 이미지 강화 도모

3. 주요내용

- 기업인의 날 지정 ·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안건은 기업인의 날 지정 ·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기업인의 날 지정 · 운영) 안 제10조는 매년 4월 30일을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9조 중소기업대상의 시상시기를 ‘안산시민의 날’에서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규정함.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9조(시상시기)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 전국 2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이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